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 5. 12 선고 2020가단61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B

피 고 1. C

2. D

3. E

4. F

5. G

변 론 종 결 2021. 4. 14.

판 결 선 고 2021. 5. 12.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태백등기소 1984. 1. 12. 접수 제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태백등기소 1984. 1. 11. 접수 제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650만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망 I(2015. 7. 7.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는 사실(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는 춘천지방법원 태백등기소 1984. 1. 12. 접수 제83호로,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는 같은 등기소 1984. 1. 11. 접수 제83호로 각 마쳐져 있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망인은 H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1984. 12. 27. 위 법원으로부터 ‘H은 망인에게 1984. 2. 28.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4가합251)을 받았고, 위 판결에 따라 1985. 8. 13.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태백등기소 접수 제3753호로 1984. 2. 28.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1985. 11. 30. 망인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1985. 12. 2.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태백등기소 접수 제5364호로 1985. 1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망인의 1순위 상속인들인 J, K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망인의 2순위 상속인인 망인의 부 L은 1947년경, 모 M는 1994. 9. 8. 사망하였으며, 3순위 상속인인 망인의 형 N은 1944. 10. 24. 사망한 사실, 또다른 3순위 상속인인 망인의 누나 O는 상속포기를 하였고, 망인의 누나 P은 2014. 12. 22.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1985. 8. 13.경 혼동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명중

부동산의 표시

1. 태백시 Q 대 142㎡

2. 태백시 Q

[도로명 주소] 태백시 R

목조 스테이지봉 단층주택 51.92㎡, 끝.

1)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984. 1. 11. 접수 제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기재하였으나,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경우 접수일자가 1984. 1. 12.로 확인되고,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